의 안 번 호

1781

# 【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〕

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2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9.(금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# 가. 제안이유

O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업무와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본어식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→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- 고문변호사 위촉(안 제2조) 및 임기 규정(안 제3조)
- 고문변호사 업무(안 제4조) 및 해촉 규정(안 제5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「변호사법」제90조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」제7조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O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고문변호사의 업무 등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- O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기준 개정은 시대의 다변화로 우리

14 (제237회-본회의제2차부록)

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다양한 입법 수요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법률자 문과 법적대응으로 사건의 책임감과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# 변호사법

제90조(징계의 종류)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.

- 1. 영구제명
- 2. 제명
- 3. 3년 이하의 정직
- 4.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5. 견책

## '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

- 제7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)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
  - 1.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
  - 2. 「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위촉된 변 호사
  - 3. 정부법무공단. 다만,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.